

◎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5-624호

**2026년도 제1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 
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**

2026년도 제1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0일

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

**< 2025년도 질병관리R&D 중점투자방향 >**

**2026년도 질병관리R&D 연구개발사업  
중점추진방향**

- ◆ **(감염병)**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전주기 대응역량 강화, 민간기피 백신 자체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우선순위 기반 백신·치료제 라이브러리 확보
- ◆ **(만성병)**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질병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강화
- ◆ **(미래의료)** 헬스케어 AI데이터 구축, 희귀질환 진단·치료 등 정밀의료 연구 강화 및 신기술 기반 한국인 범유전체정보 구축 등 인프라 확대

**분야별 세부 추진방향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>1<br/>감<br/>염<br/>병</b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백신개발) 민간기피백신개발 및 백신 핵심 기술 확보 지속 지원</li> <li>• (의료현장) 감염병 대응 의료현장 최적화로 NEXT 팬데믹 대비·대응 추진</li> <li>• (mRNA 백신) 미래 팬데믹 위기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완성을 위한 비임상 및 임상 1-2상 연구개발 지원</li> <li>• (신규감염병연구 다부처협력) 공공연구기관 간 백신·치료제 공동연구, 국가 통합 라이브러리 및 공통 연구인프라를 구축하여 팬데믹 대비 신속 대응 체계 구축</li> </ul>  |
| <b>2<br/>만<br/>성<br/>병</b>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만성질환연구) 주요 만성질환의 국가적 대응을 위한 예방·관리 기술 개발 지속 투자</li> <li>• (인공혈액) 인공혈액(적혈구, 혈소판) 제조용 역분화줄기세포주 확보 및 제조실증 연구</li> <li>• (미세먼지) 미세먼지대응 건강피해 최소화 및 인프라 고도화</li> <li>• (신규소외질환극복)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중재 연구 및 COPD 예방진단 기술개발</li> </ul>   |
| <b>3<br/>미<br/>래<br/>의<br/>료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바이오빅데이터) 한국형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보건의료 연구데이터 관리·활용 강화</li> <li>• (헬스케어AI)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실사용 헬스케어 이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</li> <li>• (보건의료자원) 민간 인체자원은행 운영 지원을 통한 질병기반 인체자원의 안정적 확보·제공</li> <li>• (미래의료 신기술) 신기술 기반 중증만성·미진단 희귀질환 진단연구 지속 및 한국인 범유전체정보(Pangenome) 구축</li> </ul> |

**질병관리R&D 중점분야 전략목표**

| 감염병                     | 만성병                      | 미래의료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주도 신속감염병<br>위기대응 체계강화 | 만성질환 극복 융복합<br>신기술 개발 강화 |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<br>정밀의료 실현 |

# I. 공고 개요

※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,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.

| RFP 번호 | 세부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| 공고단위 (RFP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기간            | 과제구성 요건 (아래 참고) | 선정 예정 과제수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-1    |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사업 |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사업 (한타 바이러스 백신 개발) | 1,5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,125백만원) | 2년 이내 *1차년도 9개월 | ① 주관<br>② 주관+공동 | 1         |
| 2-1    |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 협력사업   | 백신개발 연구협력 (국가 통합 백신 라이브러리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)   | 1,0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750백만원)   | 3년 이내 *1차년도 9개월 | ① 주관<br>② 주관+공동 | 1         |
| 2-2    | 공공기관 임무중심 감염병 연구 다부처 협력사업   | 치료제개발 연구협력 (우선순위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라이브러리 구축)     | 76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570백만원)     | 3년 이내 *1차년도 9개월 | ① 주관<br>② 주관+공동 | 1         |

※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

- ① (주관)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
- ② (주관+공동)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

| 과제 구성 요건 (예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주관  | ② 주관+공동  |
|---|---|--|
|  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주관 ○○대 / A교수</div>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주관 ○○대 / A교수</div><br>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top: 5px;">공동1 △△대 / B교수</div><br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⋮</div><br>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-top: 5px;">공동N □□대 / C교수</div> |
| * ①,②의 경우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|   |  |

※ (연구기관 구성 제한)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\*으로 구성해야 함

\* 동일기관 여부: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(협약시, 법인인증서 사용)

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,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
- 주관·공동·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

※ 지원분야·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, 접수 경쟁률,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

## II. 신청요건

### 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-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※ 상세 지원대상은 과제제안요구서(RFP)별로 확인 필요

※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

※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
(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)

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(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)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### □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

※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/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

·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## 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
 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<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(3책5공)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| 구분           | 연구책임자 | 책임자 외 연구자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주관연구개발과제(기관) | 연구책임자 | 참여연구자     |
| 공동연구개발과제(기관) | 참여연구자 |           |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(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)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

·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- 최종 과제제안요구서(RFP)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‘RFP 기획 보안서약서’ 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·공동·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
-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  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, 「범부처 국가 R&D 참여제한 예외기준(안)」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제한 예외를 인정함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### Ⅲ. 신청 방법

#### □ 공고 및 접수처

※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202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\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(공고)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 사업공고
-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 사업공고
- (접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에 접속하여 신청

#### □ 신청절차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 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- ① (연구자)**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-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-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## □ 공고 및 접수기한

- ※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,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임

| 공고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책임자<br>과제신청기간(전산입력)*     | 주관연구개발기관<br>검토·승인 기간**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6년도 제1차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<br>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| 2026. 1. 29.(목)<br>14 : 00 | 2026. 1. 29.(목)<br>14 : 00 |

\*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

\*\*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(단,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)

※ 전산입력(접수)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,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대상에서 제외됨

※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(마감 2일전부터)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망

## 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□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

※ 상세내용은 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 → 자료실 → 법규/서식에서 확인 가능

※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

## V. 기 타

### □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○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(2025.3.6. 개정)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

○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| 연구개발기관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개발비 비율  |          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영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이하   | -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
|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5% 이하  | 25% 이상    | 10% 이상               |
| 중견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0% 이하  | 30% 이상    | 13% 이상               |
| 공기업·대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% 이하  | 50% 이상    | 15% 이상               |
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(비영리·영리기관 공통 적용) | 가.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<br>나. 연구시설·장비비<br>다. 기술도입비·연구재료비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| $= \frac{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{(\text{해당 연구개발기관})\text{정부지원연구개발비} + \text{기관부담연구개발비}} \times 100$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과제제안요구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
## 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)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
 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’ 를 작성·첨부하여야 함
  -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 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에서 심의

## □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

-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## □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

-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‘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’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·기탁하여야 함

## 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
  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(영리기관·비영리기관 모두 해당)

※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

## VI. 문의처

### □ 사업공고 열람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[www.iris.go.kr](http://www.iris.go.kr)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

### □ 사업별 담당자 안내

- 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
 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1877-2041
  - ※ IRIS 콜센터 운영시간 : 09:00 ~ 18:00
- 공고단위(RFP)별 담당자 안내 (2026년 1월 초)
  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[www.htdream.kr](http://www.htdream.kr))에 별도 공지 예정